

2009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(안)

의안 번호	28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6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 안 이 유

2009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200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900,454천원으로써, 이중 8건에 744,26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내역은

	계(8건)	744,263천원
○ 손해배상금 지급		24,542천원
○ 조기집행 일시차입 이자불입		32,254천원
○ 서울대그린바이오연구단지기공식준비(폭우대비)		22,000천원
○ 3월 대설피해농가 재난지원금		1,200천원
○ 6월 우박피해농가 재난지원금		6,473천원
○ 7월 호우피해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		353,699천원
○ 신종인플루엔자예방관리 및 기자재구입		211,233천원
○ 겨울가뭄에 따른 생활용수부족지역 급수지원		92,862천원 임

3. 관 계 법 령

- 지방자치법 제129조
-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

관계법령발췌서

□ 지방자치법 제129조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지방재정법 제43조

-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총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

-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